

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

제정 2019. 7. 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공학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학교육혁신 시스템 개발
2.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공학교육 방법 개발
4. 공학교육인증 지원 및 관리
5. 공학교육 혁신성과 보급 및 확산
6. 기타 센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, 센터장은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에는 공학교육혁신부와 공학교육연구부를 두며, 각 부에는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③ 각 부의 부장은 공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④ 센터에는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하부조직 분장업무)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공학교육혁신부
 - 가.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
 - 나. 센터사업 지원 및 산학협력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 - 다.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
 - 라. 센터사업의 성과 확산 및 거점화 활동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학교육연구부
 - 가. 한국공학교육인증원(ABEEK), 한국건축학인증원(KAAB)의 인증 평가업무지원, 인증 교육과정, 인증 교육평가, 인증 교수법에 관한 사항
 - 나. 공학기초소양, 공학기초, 전공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
 - 다.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, 공과대학 및 각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검토·연구 등에 관련된 업무

제5조(역할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·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운영지침) ① 각 학부, 전공, 학과의 공학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공학인증 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.

② 각 프로그램의 공학인증 규정 및 운영지침은 각 프로그램의 위원회에서 정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7. 1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